

대구서부지사 중대재해 사례 (2018.3.3.)

본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서 동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작·배포하오니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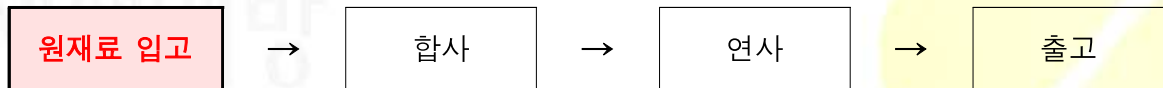
원사적재물에서 내려오다 떨어짐

< 재해개요 >

동사 소속 피해자가 사무실 앞 마당에 적재중이던 원사적재물(3단, 높이 3.3m) 위에서 원사적재물을 덮고 있던 비닐과 천막을 제거하고 내려오다 2단(높이 2.2m)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동료작업자가 목격하고 사업장 대표가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1. 재해발생과정 및 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발생과정



- 원재료인 원사를 입고하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창고 등에 보관하는 공정임.

○ 재해발생상황

- 적재물을 이동 보관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사적재물(3단) 위에서 적재물을 덮고 있던 비닐과 천막을 제거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2단(2.2m)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.



그림-1. 재해발생 현장



그림-2. 재해발생 상황도

2. 재해발생원인

○ 추락방지 및 승강설비 미설치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으며,
-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.

○ 보호구(안전모) 미착용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3. 재발방지 대책

○ 추락의 방지 및 승강설비의 설치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
-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.

※ 재해가 발생한 당해 작업의 특성상 승강용사다리, 안전난간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 이동식 비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한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○ 보호구(안전모) 지급 및 착용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